

건축사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Architect

건축사는 건축설계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한 국가자격이다.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이 관련분야 업무에서 등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기술자격인 것과는 달리 건축사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처럼 특정한 업무의 독점적 수행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자격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의 속내를 살펴볼라 치면 사정이 그리 편치 않다.

우선은 건축사의 도시 관련 설계업무 수행 기회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를 꼽아야 한다. 최근 도시공간에 대한 세심한 '디자인'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관설계, 환경디자인 등 공간환경 디자인업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설계(urban design)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설계업무가 엔지니어링업무 발주기준에 따라 발주되면서 건축사 참여가 봉쇄된 채 사실상 기술사의 고유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경설계 등 다른 분야의 반발도 적지 않다. '건축설계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분야도 넘보는가', '그렇다면 건축설계도 다른 분야에 열려라' 등. 자칫 밥그릇 싸움이 되기 십상이다.

'도시설계는 원래 건축 영역이니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주장으로는 밥그릇 다툼으로 가기 십상이다. 핵심은 '설계 질'이다. 보다 효과적인 설계 질 경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건축사의 지위를 폄하하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건축설계 발주방식에 있다. 전체 공공건축설계 중 일부가 설계경기로 발주될 뿐 대부분은 PQ 및 가격입찰인 것이 현실이다.

설계 발주방식은 법률로 규정된다. 따라서 건축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설계가 갖는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설계를 설계경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는 건축설계의 위상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법조항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일한 법조항이기도 하다.

공공발주에 관한 최고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입찰에 '일반 가격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영42조) 지식기반사업에 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영43조). 이 법조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과 산업디자인은 지식기반사업에 속하지만 건축설계는 속하지 않는다. 건축설계는 일반 용역업과 동일하게 '가격경쟁'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는 건축사들 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건축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고 수준 높게 해내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 건축사 역할의 범위와 절차가 법률로 규정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건축사 업무를 왜곡하는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원활할 리 없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될 리 없다. 법으로 보장된 지위에 만족하여 역할을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에 묶여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것도 문제다.

건축과 공간환경 설계업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변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사 업무의 법적 지위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



박인석 / Park, In-seok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